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으로 토지 등의 수용 방식 외에 환지 및 혼용 방식을 추가함(안 제17조).

II. 검토의견

개정안 제39조는 안 제17조가 역세권개발사업의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39조 및 제40조 등을 준용하고 있음. 개정안은 안 제17조제7항이 준용하는 「도시개발법」 제39조제3항¹⁾ 및 제40조제5항²⁾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5조제2항³⁾과 같이 500만

1) 「도시개발법」

제39조(토지의 관리 등)

- ③ 누구든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까지는 시행자의 승낙 없이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시개발법」

제40조(환지처분)

-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도시개발법」

제85조(과태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한 경우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한 자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개발법 시행령」 상 실제 과태료 부과기준⁴⁾을 살펴보면, 「도시개발법」 제39조제3항 및 제40조제5항 위반시 최대 300만원을 부과하고 있음.

개정안 제17조의 역세권개발사업의 환지 방식 시행과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도시개발법」 상의 과태료 처분과 같은 취지이므로, 2개 법의 과태료 부과 체계를 맞추기 위해 개정안 제39조가 규정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수정하였음.

3. 제40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4조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5. 제72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
6.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7.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4) 「도시개발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7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이상
가.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한 경우	법 제85조제2항제1호	200	300	500
나. 법 제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1호	200	400	600
다.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5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라.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2항제3호	300	300	300

* 「도시개발법」 제87조제2항은 제1호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한 경우’를 위반하였을 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으로 규정함

<안 제39조제1항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500만원 이하의</u>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도시개발법」 <u>제39조제3항을 위반한 자</u> 2. 제17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도시개발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도시개발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2. 제17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도시개발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경미한 자구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